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안에서 선거 운영과 관리를 질서 있게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다.

제2조 (조직)

임원은 첫 번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한다.

제3조 (회의)

첫 번 회의 소집은 첫 기명자가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시 소집하며 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위원은 타 위원에게 위원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4조 (후보자 등록)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 등록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아 6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등록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으로 추가등록자를 결정하고, 추가등록자도 없을 경우에는 총회규칙 제3장 8조 2항을 준용한다.
2. 부총회장 후보자는 총회 내의 이사 및 위원직을 사임하고, 총회총무 후보자 중 총회내의 임명직에 있는 자는 모든 공직을 사임하고 등록한다.
3.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는 선거 공영 업무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등록금과 운영경비를 납부해야 하며, 그 액수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4. 임기 중 정년에 해당될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 (후보자 등록공고)

위원장은 등록된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자의 성명, 연령, 소속 노회, 직분, 경력과 총회 규칙에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총회 회보와 선거 홍보물 및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후보자 정책토론회)

1.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총무 후보의 정책토론회를 권역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2. 시기, 횟수,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한다.

제7조 (후보자 소개)

후보자 소개는 소속 노회 총대 중 1인이 하며 그 시간은 3분으로 한다. 소개 순서는 기호 추첨하여 정한다.

제8조 (후보자 소견발표)

각 후보자는 3분 이내의 소견 발표를 한다.

제9조 (투표방법)

총회 선거는 전자투표와 용지투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행세칙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2. 용지투표 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행세칙 제12조-19조를 준용한다.

제10조 (표결방법)

1. 표결은 다른 방법에 의한 표결을 의결하지 않는 한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한다.
2. 투표 진행 과정에서 기기의 고장,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전체 총대원에 대해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토록 한다.

제11조 (표결 진행 및 처리)

1.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위원장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위원이 동석하여 시행한다.
2. 투표 시작은 위원장의 투표 선포로 시작된다.
3. 투표종료는 위원장의 선포로 종료되고, 종료 선포까지 마지막 누른 것이 결과로 처리된다.
4. 투표종료 선포까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석인원 포함 후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12조 (투표지)

1. 총회장은 백색지, 부총회장 중 목사는 황색지, 장로는 분홍색지, 총무는 청색지로 한다.
2. 전 1항의 투표지 모두를 배부하고 기표하여 투표함에 같이 넣는다.

제13조 (기표소 및 투표함)

기표소는 6개소 이상, 투표함은 3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제14조 (유효 및 무효표 판정)

유효표는 원하는 후보 한 명을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것으로 하고, 무효표는 일반 조례에 준하여 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투·개표위원)

투·개표위원은 각 노회 서기로 하며, 서기가 총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노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개표는 본 위원회가 한다.

제16조 (검표위원)

검표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5명을 선정하여 검표케 한다.

제17조 (투표함 관리)

투표함 관리는 본 위원회가 한다.

제18조 (당선선언)

개표 결과는 위원장이 확인, 보고한 후 총회장이 선언한다.

제19조 (투표용지 보관)

투표용지는 구별 정리하여 1년간 위원회가 별도 보관한다.

제20조 (재검표)

투·개표 결과, 착오가 지적되어 재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는 즉시 재검표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21조 (후보자 및 유권자 규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 본 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주의, 경고, 1~3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할 수 있다.

제22조 (규제조치)

경고 이상의 결정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총회 회보에 공고한다.

제23조 (규제사항)

본 위원회가 규제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선거 공고 전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
2. 선거와 관련된 금품수수, 숙박 및 교통 편의 제공 등
3. 총회, 노회, 기타 단체에 대한 이례적인 기부 행위
4. 본 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공청회(정책토론회) 외의 일체의 집회 방문 및 대리인 참석
5.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 등

제24조 (불법으로 당선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을 어기고 당선된 자는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 무효 됨을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재판국에 회부한다.

제25조 (신고)

불법행위의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일지라도 근거를 제시하여 신고하면 조사 처리해야 하고, 신고가 없어도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재량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

제26조 (개정)

이 세칙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0년 9월 제85회 총회 개정
2004년 9월 제89회 총회 개정
2006년 9월 제91회 총회 개정
2008년 9월 제93회 총회 개정
2010년 9월 제95회 총회 개정
2011년 9월 제96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